

1. 개정이유

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 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17891호, 2020. 01 .12. 공포, 2021. 05. 13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범칙금·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·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과태료·범칙금 규정을 정비(별표6, 별표8)

나.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(안 제45조 등)

3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·국토교통부와 협의 완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, 1월 중 실시 예정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86조제3항제5호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94조제3항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”을 “자동차등(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4호의 면제대상자란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별표 6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“제1호의2”를 “제1호의3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10호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을 다음과

같이 한다.

1의2.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	제160조제2항제9호	10만원
---	-------------	------

10. 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(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)
--

별표 8 표에 제1호의5, 제1호의6 및 3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표 제5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64호의2의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란을 “개인형 이동장치 : 10만원 자전거 : 3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64의3의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란을 “개인형 이동장치 : 13만원 자전거 : 10만원”으로 한다.

1의5.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	제43조	자전거등 : 10만원
1의6.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	제50조제8항	

3의4.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	제50조제10항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

57의2. 등화점등 불이행·발광장치 미착용(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)	제50조제9항	
--	---------	--

38.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	제50조제4항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5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)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,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<u>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</u> 의 운전		제45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) ① -----		
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(이하 “적성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		-----		
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		----- <u>자동차등</u> -----		
실시한다. 다만,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,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		-----		
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		-----		
1. ~ 4. (생략)		-----		
② ~ ⑤ (생략)		-----		
제46조(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)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<u>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</u>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	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	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
		제46조(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) -----		
		--- <u>자동차등</u> -----		

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47조(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) ①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8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) 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(이하 “장내기능시험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제86조(위임 및 위탁) ①·② (생략)

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) ① -----
----- 자동차등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) ① -----
----- 자동차등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86조(위임 및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략)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. 1. ~ 4. (생략) 5. 법 제97조에 따른 <u>자동차등</u> 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의 운전 금지 6. · 7. (생략) ④ · ⑤ (생략) 제94조(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경찰서장은 <u>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</u>의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하였거나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고처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·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. ④ (생략)	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자동차등</u>----- ----- ----- 6. · 7. (현행과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제94조(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자동차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